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통합방위 유관기관의 기관 명칭 및 부대 명칭 변경 사항을 현행화하고, 간사 명칭을 특정 직위 대신 담당 업무를 기준으로 지정함으로써 향후 직제 개편 시에도 조례 개정 없이 유연한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관 명칭 및 부대 명칭 변경, 통합방위협의회 간사 명칭 변경(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0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 의 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전지방공소청장

3의2.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7. 관할 국군방첩부대의 장

제3조제4항제2호 중 “작전참모”를 “업무담당참모”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동원참모”를 “업무담당참모”로 한다.

3. 정보담당간사: 국가정보원 대전지부 통합방위 담당과장, 관할 국군방첩부대 업무담당과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2014.8.20.일부개정)	②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3. 대전지방공소청장
<신 설>	3의2.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332방첩부대장	7. 관할 국군방첩부대의 장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작전담당간사: 제32보병사단 작전참모	2. ---------- 업무담당참모
3. 정보담당간사: 국가정보원대전지부 대공수사처장, 332방	3. 정보담당간사: 국가정보원 대전지부 통합방위 담당과장, 관

첩부대 업무담당과장	할 국군방첩부대 업무담당과장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예비군담당간사: 제32보병사단 동원참모	5. ---------- -- 업무담당참모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 3. 22.>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개정 2024. 1. 16.>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8. 20., 2014. 11. 19., 2015. 1. 6., 2017. 7. 26., 2018. 8. 21., 2020. 10. 7., 2020. 12. 31., 2022. 11. 1., 2026. 9. 29.>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공소청장, 지방공소청 지청장 또는 검사

4의2.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5.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24.>

④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12. 24.>

1.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⑤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

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8. 12. 24.>

⑥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2. 24.>

⑦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11. 29., 2018. 12. 24.>

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⑧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2. 24.>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11. 17.]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09. 11. 17.>]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동 조례 개정으로는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이 재 준

[붙임 3]

현 행 조 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5. 9. 29.]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838호, 2025. 9. 29.,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안전정책과), 044-300-324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0.)

제2조(통합방위지침)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시 등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2보병사단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지침」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개정, 2019. 9. 30.><개정, 2022. 11. 14.>

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한 위원 15명이상 30명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6. 15.) <개정, 2025. 9. 29.>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2014.8.20.일부개정)(개정 2015. 6. 15.)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3.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4. 제32보병사단장
5. 국가정보원 대전지부장
6.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개정, 2019. 9. 30.><개정, 2022. 11. 14.>
7. 332방첩부대장<개정, 2019. 9. 30.><개정, 2025. 9. 29.>
8. 충남동부보훈지청장 (개정, 2017. 11. 10.)
9.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10.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장
11.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회장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0. 7. 15.>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1. 총무·민방위담당간사: 업무담당과장(개정 2013.7.30)(개정 2015.6.15.)<개정, 2020. 7. 15.>
2. 작전담당간사: 제32보병사단 작전참모<개정, 2020. 7. 15.>
3. 정보담당간사: 국가정보원대전지부 대공수사처장, 332방첩부대 업무담당과장(개정, 2017. 11. 10.) <개정, 2019. 9. 30.><개정, 2020. 7. 15.><개정, 2025. 9. 29.>
4. 경찰담당간사: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업무담당과장<개정, 2019. 9. 30.><개정, 2020. 7. 15.><개정, 2022. 11. 14.><개정, 2025. 9. 29.>
5. 예비군담당간사: 제32보병사단 동원참모<개정, 2020. 7. 15.>

6. 소방담당간사: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업무담당과장<신설, 2025. 9. 29.>
<제3항에서 이동, 2020. 7. 15.>

⑤ 협의회 간사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제4항에서 이동, 2020. 7. 15.>

⑥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제5항에서 이동, 2020. 7. 15.>

⑦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항에서 이동, 2020. 7. 15.><개정, 2025. 9. 29.>

제3조의2(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협의회와 통합·운영한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개정, 2017. 11. 10.)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개정, 2017. 11. 10.)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0. 7. 15.>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개정, 2022. 11. 14.>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6. 통제구역 설정
7.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8. 「예비군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방위협의회 심의사항<신설, 2019. 9. 30.>
9.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관장사항<신설, 2019. 9. 30.>
10.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제8호에서 이동, 2019. 9. 30.>

제5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통합방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3.7.30) (개정, 2018. 2. 26.) (개정, 2018. 8. 10.)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운영) ① 시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및 읍·면·동 지원본부를 둔다. (개정, 2017. 11. 10.)

② 지원본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1급 발령, 주요 훈련 및 필요시(협의회 의결시)에 구성·운영한다.<개정, 2019. 9. 30.>

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읍·면·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

④ 상황실은 실장과 25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조정·통제한다.
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읍·면·동은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 등 2~4개반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9. 30.>
⑥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가 있는 국장급 공무원(읍·면·동 담당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2014.8.20.일부개정>
⑦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가.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 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개정, 2022. 11. 14.>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표창 추천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가.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1. 14.>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를 드높이고, 민·관·군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사항<개정, 2020. 11. 13.>
4. 통합방위 취역지역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⑧ 지원본부의 각 기능별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⑨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7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①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경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제32보병사단 관계참모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공공안전과장으로 임명한다.<개정, 2019. 9. 30.><개정, 2022. 11. 14.>
④ 합동상황실은 제32보병사단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개정, 2019. 9. 30.>
⑤ 각종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드론, 인공지능 영상관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에 대한 통합방위 정보를 유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 9. 29.>

제8조(취약지역 대비책) 「통합방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개정, 2019. 9. 30.>
라. 관계 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개정, 2025. 9. 29.>
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
사. 장애물 설치 등 대비책 강구
2.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水上)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당연직 위원 중 재향군인회장과 위촉직 위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10.)<개정, 2021. 7. 15.>

제10조 <삭제, 2025. 9. 29.>